

대학평의회운영규정

제정 2006. 12. 1

개정 2008. 2. 19

개정 2018. 4.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정관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7에 따른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5인 : 보직교원 및 전임교원
2. 직원 3인 : 직원(5년 이상 근속)
3. 학생 1인 : 재학생 중 대표
4. 동문 1인 : 동문대표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인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는 교원인사위원회와 직원인사위원회에서 각각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4호는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에서 각각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 제5호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⑤ 평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원) ①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평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 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에게 평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교직원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이사과 감사의 추천) ①대학평의원회는 학교법인 청강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과 감사의 추천을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③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추천위원회는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⑤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①추천하는 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법인 및 대학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개방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추천위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회의록) ①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출석 평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의장이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며,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예산지원)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